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8. 12. 15.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8년 12월 2일
 -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3일
- 상정일자 :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8. 12. 3 :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·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)

- 제안 이유
 -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 충청북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- 도예술단의 장르는 챔버오케스트라로 하고, 단원은 30명 이내,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함(안 제2조)
- 단장, 부단장, 예술 감독겸 지휘자의 직무(안 제3조)
- 예술 감독겸 지휘자, 단원 및 사무직원 등의 자격과 위촉방법(안 제5조)
-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단원 등의 해촉 사유(안 제10조)
- 운영자문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1조)
-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보수, 여비 등의 지급기준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)

-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
- 본 조례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 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,
-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의 장르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예술단체간의 갈등문제가 더 이상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이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된다.

② 예술단에는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 사무국을 둔다.

③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30명 이내,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예술감독겸 지휘자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공연기획, 공연지휘,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예술감독,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상임단원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

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.

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예술감독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 자 중 예술감독 선정심의회(이하 “선정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적격심의를 거쳐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② 선정심의회는 제6조의 전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③ 상임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

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④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사무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6조(전형위원회) ① 상임단원의 위촉을 위한 전형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

② 전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

제7조(상임단원 전형방법)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 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

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8조(결격사유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제9조(위촉기간)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(단원 등의 해촉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과 사무직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8조에 해당하는 자
2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
3.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4.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
5.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
6.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
7.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
8.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제11조(운영자문회) ① 예술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회(이하 “운영자문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자문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, 당연직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 회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, 회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.

④ 위촉회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 운영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예술단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2. 예술단운영 기본계획
3. 단원 및 사무직원의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⑦ 운영자문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운영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도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

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단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.

② 도지사는 예술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연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단원 및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,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관람료 등)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예술단의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한다.

제16조(관람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면 적용을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
2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3. 「5.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노우대 노인
5.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

② 장애인에 대하여는 「장애인복지법」 감면 조항에 의거 감면한다.

제17조(입장권)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과 무료입장권(이하 “초대권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② 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.

③ 관람권은 공연장소의 매표구에서 현장판매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, 판매 수수료율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

④ 초대권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관람료 감면 구분(제16조 관련)

구 분		대 상	감면 요율 (%)
할 인	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	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	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.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	50
	노 인	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(65세 이상)	50
	단 체	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	20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7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6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

[별표 10] <신설 2002.12.30>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(제86조관련)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8. 국·공립공연장(대관공연을 제외한다)	100분의 50

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
제23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 (고궁 등의 이용)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86조를 준용한다.

□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
제59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5.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2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02.12.31>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(제52조관련)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8.국·공립공연장(대관공연을 제외한다)	100분의 50

□ 노인복지법

제26조 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

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19조 (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)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(이하 "경로우대시설"이라 한다)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

[별표 1] <개정 2007.12.13>

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(제19조제1항관련)

시설의 종류	할인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8. 국·공립국악원	100분의 50 이상
9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	100분의 50

비 고

2.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17조(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
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 <개정 2008.2.29>

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(제17조 관련)

시설의 종류	감 면 율 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4. 국공립 공연장	100분의 50

비 고

2.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.